

:

: 『

』

- " " -
『 』
< 341 >

「 」

•

0

• ,

가

0

가

•

0

가

가

가

•

0

『

』

가

,

가

•

•

0 '96. 6. 17. 가

0 '95. 10. 16. 가

0 '95. 12. 27. 『 』 .

( 15182 )

'97. 1. 1. 『 』

•

0 ,

24 .

0 . 가

•

0

•

0 가 .

•

•

① ( 12 2 )

0 가 .

가 , .

•

1. . . . .

2. . ,

3. , ,

4. , . . 가  
가

0 . ,  
가 ,  
.

**2** **24** ( 13 )

0 가

. 24

0 가 . . 24

( )

- . 24  
가

" "

0 가

·24

,

-

가

가

.

-

.

0

.

.

가

가

·24

.

-

가

,

.

0

.

가

가

-

.

가

.

(

13

5

).

0

-

,

,

.

.

- ( : ) -24

[3] ( 22 )

0 . 가 가

가 ,

- 3 : 2

\* , 1 7

가

. ( [ 2] ) .

: 540cm × 360cm

[4] ( 17 )

0 . 가

가

- 가

, 가 가

- 가 가

가  
가  
0  
가

5

( 22 2 )

0  
가  
가  
가  
가  
가

6

0 , .  
0 .  
0 . ,  
0 .  
0 .  
0 .  
0 .  
0 .

7

( 7 2)

0 .24  
가 .  
0 , 가 .

8

「

」

< ( 12 1 ) >

o .24 ,

가

- , 1 1 , ,

- , , ( )

o 가

,

.

0 가 .

- TV, 가

-

- 가

-

- ,

\*

,

0

-

가

’  
- , ,

-

,

가

- . .

가

가

-

,

- 가

가 가

- 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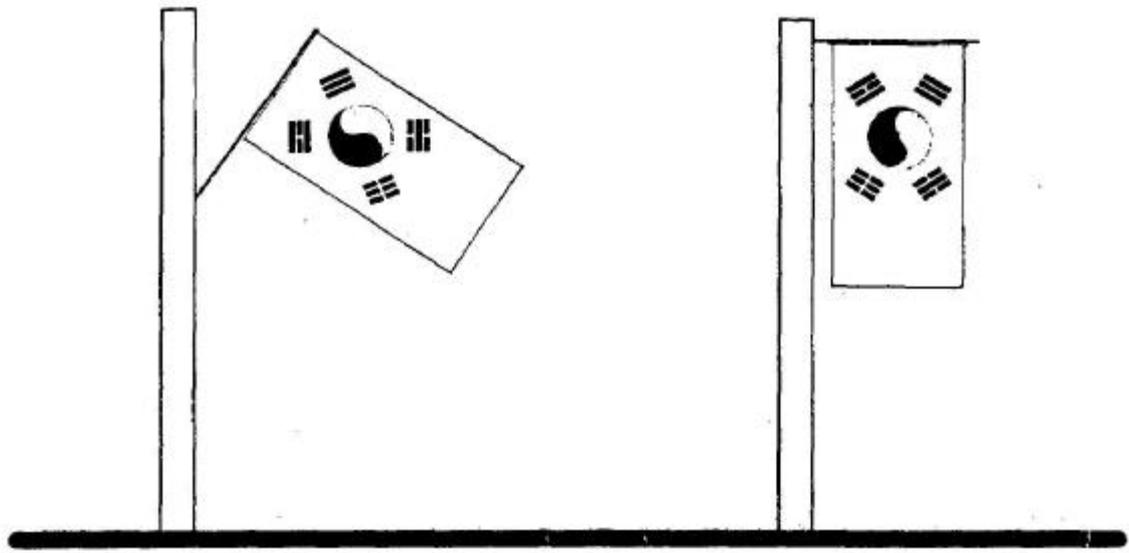
.

가

,

가

가



< 현행 >

< 권장형(배너형) >

9

( 2 )

0

,

가

0

· 24

,

가

,

0

,

가

.

V.

0

-

TV

가

-

,

( :

)

TV

가

-

.

,

-

가

,

.24

-

.

.

.

-

가

-

,

-

(

가

)

\*

가

가

	<p>○ 『 』 .</p> <p>○</p> <p>○ ( . )</p> <p>○ 가 .</p> <p>○</p> <p>○</p>	
	<p>○ .</p> <p>-</p> <p>-</p>	
	○	
	<p>○ .</p> <p>○</p>	
	<p>○ .</p> <p>○ . 24</p> <p>○</p>	
	<p>○</p> <p>- ,</p> <p>- ,</p> <p>- .</p> <p>-</p>	
	<p>○ Cl, Cl 가</p> <p>- 가 .</p> <p>○ . 24</p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Cl, Cl 가</li> <li>- 가 .</li> <li>o . 24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</li> <li>o</li> <li>- , 가</li> <li>-</li> <li>o 가 .</li> <li>o 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</li> <li>-</li> <li>o PC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,</li> <li>102</li> <li>18</li> <li>o</li> <li>o . 24</li> <li>o . 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. . 24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. 24</li> <li>o 가</li> </ul>	



·  
0 '97 1

1 , , 2

0 ( )

, '97.1.31 ( ) .

- , 1

1 . .

0

· · .

0 가 ,

, , .

· 24 ,  
가 ,  
·

[별첨]

국기 야간조명시설 설치시 유의사항

가. 전등의 선택

- 태극기의 색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전등 사용 (메탈할라이드 계통)
- 전력량(W)당 광량이 많은 것을 사용(lm/W)하여 에너지를 절약
- 수명이 길고 빛의 색상(연색성)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

나. 설치위치의 선정

- 건물의 위치, 주변도로 등 여건에 따라 시민의 진행방향 및 시선방향을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위치를 선정

다. 조명기구의 선택

-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기구의 선택
  - 지중등, 벽면을 이용한 스포트, 바닥 스포트 중 선택
- 설치위치에서 태극기 전체를 비추는 배광곡선의 조명기구 선정
- 방수등(防水燈)이어야 하며,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설치
- 안정기 설치 및 램프에 맞는 성능인지를 검토

라. 점등방식의 선택

- 일반스위치, 타임스위치, 태양센서스위치 중 설치위치에 가장 적합한 점등방식을 선택

마. 기타 설치시 유의사항

- 태극기의 나부낌을 예상하여 태극기 전체가 밝게 보이도록 유의
- 행인과 차량 및 건물 내에서 눈부심이 없도록 주의
- 차후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 (조명구 청소, 교체용 전등 확보 등)
- 2개 이상의 게양대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, 다른 기에도 동일한 시설을 설치 후 조명하도록 함

※ 설치예 (광화문 정부제1종합청사의 경우)

- 17m 높이의 게양대에 메탈등(400w) 3개 설치

## 5 태극기 문양 및 디자인의 적극 활용 (규정 제22조의 2)

- 지금까지는 태극기 디자인의 생활용품 등에서의 활용이 금지되어 왔으나,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토록 함.
  - 넥타이·티셔츠 등 생활용품, 가방·필통 등 학용품, 달력·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 가능함.
- 다만, 속옷, 양말 및 일회용소모품 등과 같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태극기를 비하하는 디자인도 사용 불가함.

## 6 국기보급의 확대

- 백화점, 통신판매 등 국기판매망을 적극 확충토록 함.
- 혼수품용 태극기셋트를 개발·보급하여 신혼부부의 혼수품으로 활용토록 권장함.
-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·단체,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기념품으로 증정토록 함.
-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시 태극기셋트 증정을 권장함.
- 아파트 입주시 입주민에게 태극기셋트를 증정토록 권장함.
- 우체국에 우편주문용 서식을 비치하여 국민들에게 구입편의를 제공함.
- 도서벽지주민 및 해외동포에게 국기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함.

## 7 국기의 제질 및 색상 개선 (규정 제7조의 2)

- 태극기의 연중·24시간 계양에 따른 탈색이나 오손방지를 위하여 특수 천 및 가공 방법을 연구·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.
- 각종 천, 인쇄물 및 영상매체 등에서 태극기가 동일한 색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태극기의 표준색도를 지정하여 고시함.

## 5] 태극기 문양 및 디자인의 적극 활용 (규정 제22조의 2)

- 지금까지는 태극기 디자인의 생활용품 등에의 활용이 금지되어 왔으나,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토록 함.
  - 넥타이·티셔츠 등 생활용품, 가방·필통 등 학용품, 달력·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 가능함.
- 다만, 속옷, 양말 및 일회용소모품 등과 같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태극기를 비하하는 디자인도 사용 불가함.

## 6] 국기보급의 확대

- 백화점, 통신판매 등 국기판매망을 적극 확충토록 함.
- 혼수품용 태극기셋트를 개발·보급하여 신혼부부의 혼수품으로 활용토록 권장함.
-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·단체,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기념품으로 증정토록 함.
-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시 태극기셋트 증정을 권장함.
- 아파트 입주시 입주민에게 태극기셋트를 증정토록 권장함.
- 우체국에 우편주문용 서식을 비치하여 국민들에게 구입편의를 제공함.
- 도서벽지주민 및 해외동포에게 국기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함.

## 7] 국기의 재질 및 색상 개선 (규정 제7조의 2)

- 태극기의 연중·24시간 계양에 따른 탈색이나 오손방지를 위하여 특수 천 및 가공 방법을 연구·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.
- 각종 천, 인쇄물 및 영상매체 등에서 태극기가 동일한 색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태극기의 표준색도를 지정하여 고시함.